

싱가포르**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**

(2013년 11월 13일)
(자카르타 aT)

구분	핵심 내용
라벨	☐ 싱가포르 수입식품 포장표기 가이드('13년 10월 개정판)

항목	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	☐ 주요 내용 ○ 싱가포르는 제품 라벨링과 관련하여 수입자/판매자 책임 제도 실시로 수입시점에서 기본적인 라벨링에 대해서만 검사 실시 ○ 수입 통관시 요구되는 라벨링 - 상품명, 단위 및 중량, 수입자 상호, 수출자 상호, 원산지 ○ 일반식품에 대한 기본 라벨링 항목 - 표기언어(영어), 글자크기, 제품명 (설명), 구성성분 (제품구성 모든 재료), 평균 중량 제조자, 수입자 포장자 또는 유통자의 상호 및 주소, 원산지, 포장일자 및 유통기한 (글자 높이 3mm 이상) ○ 라벨링 예외 규정 - 구매자 앞에서 계량 포장되는 식품 (신선육류, 활어, 즉석 제과류 및 빵류) - 알레르기 및 특기사항(건강관련 기능성 주장)등의 표시는 건강 과학청(HSA)에서 허가된 내용 이외의 표시는 규제됨 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보다 자세한 싱가포르 식품포장 가이드는 하기 사이트 참조 / 수입자와의 세부사항 상호 확인을 통해 통관 상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해소 필요 ☐ 발표 일자/ 출처 : Agri-Food and Veterinary Authority, Singapore('13년 10월) http://www.ava.gov.sg/NR/rdonlyres/B96B0EC2-1D1E-4448-9C25-ABD8470D2BF4/26937/AGuidetoFoodLabellingandAdvertisementsVersionSepte.pdf